

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,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을 신설하고,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,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환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